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5232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1198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120,510원, 지방교육세 4,053,580원, 농어촌특별세 5,437,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부터 7행까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가산세 24,295,54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10,364,99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930,550원"으로, 제3면 2행의 "가산세 1,092,16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296,14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96,020원"으로, 제3면 3행의 "가산세 1,735,38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35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95,03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제5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법 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박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은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취득세 추징요건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소정의 '해당 용도'는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미술관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을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야만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일반인인 원고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경우도 원고의 감면 신청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 주었으며 원고에게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1년 내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거나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추징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추징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본래의 부과처분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규정에 따라 부과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에 대하여 각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8조(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14

■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끝 -